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을 비상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민방위 경보운영 및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‘민방위경보통제소’를 서울종합방재센터(소방조직) →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
- 민방위경보 지휘체계(평시-서울종합방재센터, 전시-비상기획관)의 일원화를 통해 경보발령부터 후속조치(대피시설 안내 등)까지 민방위 업무 전반 통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'23. 7. 28. ~ 8. 1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(☎2133-672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재해와 재난, 민방위경보를 총괄 지령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4조(설치)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<u>재해와 재난, 민방위경보를 총괄 지령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시장</u> 소속하에 서울종합방재센터(이하 이 절에서 “방재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6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, 민방위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34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소관사무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조직의 소관 부서 변경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,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(☎ 2133-6729)